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18 .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7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최초 위탁결정 후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 시립어린이집 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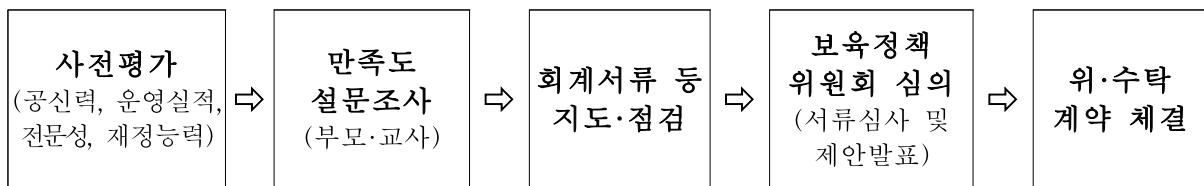
- (재계약) 5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수탁체 (원장)	소재지	규모 (m <sup>2</sup> )	개원일	정원 (현원)	보육 교직원	위탁기간
1	다산페스트리버	김○호	다산지금로 146번길 100	334	'19.9.1.	70 (69)	13	'24.9.1.~ '29.8.31.
2	아이유쉘	김○희	화도읍 수래로 1233번길 34	206	'19.9.1.	34 (34)	12	'24.9.1.~ '29.8.31.
3	오네뜨	최○영	늘을3로 88-12	117	'19.9.1.	26 (26)	11	'24.9.1.~ '29.8.31.
4	다산아이사랑	정○일	다산중앙로 82번길 12	361	'19.10.1.	69 (69)	14	'24.10.1.~ '29.9.30.
5	다산누리봄	이○성	다산중앙로 145번길 38	406	19.11.1.	75 (75)	14	'24.11.1.~ '29.10.31.

- 위탁기간 : 5년    \*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 최종 결정



※ 최종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

##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소요예산 : 3,422,136천원(2024년도 예산 기준)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3,422,136	2,172,350	1,249,786
1	다산퍼스트리버	70	13	762,670	453,537	309,133
2	아이유쉘	34	12	622,976	433,568	189,408
3	오네뜨	26	11	471,593	359,765	111,828
4	다산아이사랑	69	14	762,728	459,093	303,635
5	다산누리봄	75	14	802,169	466,387	335,782

##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건전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li></ul>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li></ul>

구 분	검 토 의 견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li> </ul>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li> </ul>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평가제 결과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li> </ul>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li> </ul>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li> </ul>

○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 세부내역 별첨[붙임3]

연번	어린이집 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50점)	2차 평가(50점)
				공신력, 운영실적, 전문성, 재정능력, 부모·교직원 만족도조사, 회계점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1	다산퍼스트리버	적격	93.00	50	43.00
2	아이유쉘	적격	95.00	50	45.00
3	오네뜨	적격	93.71	50	43.71
4	다산아이사랑	적격	93.43	50	43.43
5	다산누리봄	적격	93.29	50	43.29

####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관계법령(붙임1), 시립어린이집 심사 기준표(붙임2)

나. 관련부서 : 보육정책과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불임1

##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

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⑦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불일 수 있다.

##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재위탁 · 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② 시장은 재위탁 · 재계약 시 의회동의 이전에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

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2.15.>

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⑤ 시장은 재위탁 ·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불임2

##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재계약) 심사 기준표

### [1차 정량평가]

심사항목 합 계	총점 50	세부항목	배점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 · 법적 공신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li> <li>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경우</li> <li>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이 우려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li> </ul> <p>* 위탁 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 ※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부적격 처리(위탁 취소)</p>	10점 8점 6점
2. 운영체의 운영실적	19	회계관리의 적절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간 내 재무회계 점검 결과(수입 · 지출 원칙, 시립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li> <li>보통</li> <li>미흡</li> </ul> </li> </ul>	5점 3점 1점
		어린이집 만족도조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만족도조사(10항목×5점=50점) *소수점 이하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 이상 (45점 이상)</li> <li>80% ~ 89% (40점 ~ 44점)</li> <li>70% ~ 79% (35점 ~ 39점)</li> <li>70% 미만 (34점 이하)</li> </ul> </li> </ul> <p>※ 단, 회수율이 50%미만인 경우</p>	7점 6점 5점 4점 2점
		장애아통합보육 실시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간 내 장애아통합보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이상</li> <li>1년 이상 ~ 3년 미만</li> <li>1년 미만</li> </ul> </li> </ul>	3점 2점 1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li> </ul>	1점
		시책사업 운영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 부여</li> </ul>	+1점
3. 운영체의 전문성	16	최근 5년 이내 평가제 참여 결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등급 A</li> <li>· 평가등급 B</li> <li>· 평가등급 C</li> <li>· 그 외</li> </ul>	10점 5점 3점 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li> <li>· 5년 이상 ~ 10년 미만</li> <li>· 3년 이상 ~ 5년 미만</li> </ul> <p>※ 경력인정 :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p>	5점 4점 3점
		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간 내에 보육 관련 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는 자</li> </ul> <p>※ 장관, 도지사, 시장 표창에 한하며, 공모사업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수상실적까지 인정</p>	1점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50				
4.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단체·개인> · 2억 이상 · 1억 이상 ~ 2억 미만 · 1억 미만	<법인> · 5억 이상 · 3억 이상 ~ 5억 미만 · 3억 미만	5점 4점 3점

## [2차 정성평가]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50				
1. 운영체의 운영실적	15	시설 운영 관리 (10)	·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 관리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유지 정도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이하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5)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2.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보육사업계획 (10)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참신성, 전문성,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이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5)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운영계획의 구체적, 타당성, 이행가능성 여부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예산의 적절성 (5)	·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세입항목) 보육료수입, 수의자부담금, 인건비 보조금, 보육료보조금, 기본보조금, 기타지원금 (세출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급간식비, 행사비, 수익자부담금지출, 전출금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3. 운영체의 전문성	10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안전 관리의 적절성 (5)	·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 건강·영양·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정성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5)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전문자격증 보유, 연구논문, 표창)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5)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 불임3

###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

구분	심사항목	배점	어린이집명				
			다산퍼스트리버	아이유쉘	오네뜨	다산아이사랑	다산누리봄
계		100	93.00	95.00	93.71	93.43	93.29
1차 평가	소계		50	50	50	50	50
	1.운영체의 공신력	10	10	10	10	10	10
	2.운영체의 운영실적	회계관리의 적절성	5	5	5	5	5
		만족도조사(부모·교사)	10	10	10	10	10
		장애인 통합보육	3	3	3	3	3
		열린 어린이집	1	1	1	1	1
	3.운영체의 전문성	평가등급	10	10(A)	10(A)	10(A)	10(A)
		업무경력	5	5	5	5	5
		포상 및 공모사업 실적	1	1	1	1	1
	4.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5	5	5
2차 평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1.운영체의 운영실적 2.어린이집 운영계획 3.운영체의 전문성	50	43.00	45.00	43.71	43.43	43.29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 위탁 선정

\*\*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